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12 선고 2013가단22540 판결 [점유회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인터비전

변론 종결 2016. 6. 14.

판결 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임야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경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 중 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1. 4. 13.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1652)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 서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5111호로 유치권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44필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 등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44필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일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1.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과 게시판을 설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점유 침탈 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나66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23.(2012. 11. 9. 변론종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44필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정 하에 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 9. 1.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부동산 중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10. 12.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2011. 5. 이후부터는 직원들을 계속 현장에 상주시킬 형편이 안 되어 자신과 직원들이 현장을 왔다 갔다하면서 점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등의 직원들은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D도 피고들의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등만으로는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18297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10. 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및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등을 놓아두고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3. 12. 3. 이 사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그 점유 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나6666호 사건에서 2011. 9. 1.경은 물론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2. 11. 9.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4필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인정 되었는데, 이에 배치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나6666호 사건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8.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이 사건토지를 계속 점유해 왔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